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. 12. 20 선고 2021가단529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D

피 고 E

소송대리인 F

변 론 종 결 2022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0.

주 문

1. 서산시 G 임야 129㎡에 관하여 F과 피고 사이에 2017. 5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3,831,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,831,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서산시 G 임야 129㎡에 관하여 F와 피고 사이에 2017. 5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F에게 서산시 G 임야 129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7. 5. 19. 접수 제19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, 가액배상으로 65,531,4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

1) 원고들은 F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. 4. 3. "F은 원고들에게 각 6,666,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. 2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 판결(2008가소12367)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2) 원고들은 2018. 12. 28. 위 1)항 채권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은 2019. 6. 17. "F은 원고들에게 각 6,666,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. 2. 18.부터 2019. 5. 8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 판결(2019가소3402)을 선고하였다.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이 2022. 7. 22. 항소기각 판결(2021나1016)을 선고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1) F은 2017. 5. 19. 딸인 피고에게 서산시 G 임야 129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2019. 1. 1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,910만 원, 채권자가 H인 가압류 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 등기’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증여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(2020년 개별공시지가 3,831,300원)과 충남 태안군 I 임야 3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¹⁾가 있었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원리금 52,996,730원²⁾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, 5, 10, 12, 15, 20호증의 각 기재,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F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

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.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가압류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‘6,666,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’과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

가액 3,831,300원³⁾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3,831,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3,831,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⁴⁾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강문희

1) 이 사건 임야의 면적과 현황,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권리자가 서산시, 대한민국,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, 아산시, 태안군인 총 6건의 압류등기가 경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공동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

2) $(6,666,600\text{원} \times 3) + [(6,666,600\text{원} \times 3) \times 20\% \times 8\text{년 } 91\text{일}]$, 원 미만 버림

3)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.

4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,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

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,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8690,8706 판결).